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(김태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4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발 의 자 : 김태수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기대, 김제리, 김평남,
문장길, 성흠제, 유정희,
이상훈, 이준형, 장상기,
최웅식, 홍성룡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, 잔여 공간에 문화·여가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소통하는 장소로 만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의2 신설)
- 나. 운영인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의3 신설)
- 다.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의4 신설)
- 라. 문화·여가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인력배치) 시장은 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.

1. 「소방기본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3호에 따른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운영인력
2. 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인원
3. 체험관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및 시설관리인력
4. 그 밖에 체험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

제2조의3(교육 훈련) 시장은 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하여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·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조의4(자원봉사자)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(의용소방대원 포함)를 배치할 수 있으며,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의2(문화·여가공간 제공)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험관의 주요시설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·여가 공간으로 제공할

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조의2(인력배치) 시장은 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「소방기본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3호에 따른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운영 인력</u> <u>2. 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인원</u> <u>3. 체험관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및 시설관리인력</u> <u>4. 그 밖에 체험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</u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조의3(교육 훈련) 시장은 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하여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·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조의4(자원봉사자)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(의용소방대원 포함)를 배치할 수 있으며,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
<신 설>

제12조의2(문화·여가공간 제공)

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
하여 체험관의 주요시설을 운영
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·여
가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.